

배포일시	2012.8.17.(금) 16:00(총3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	담당자	과장 김 백 조 연구관 이 영 곤
		전화번호	070-7850-6552 070-7850-6553

**기상-농업 융합연구로 농촌경제 안정 도모**  
- 국립기상연구소-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-

□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(소장 권원태)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(원장 이동필)은 기상재해로부터 농촌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, 국가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8월 17일(금) 기상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

<국립기상연구소-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업무협약 체결>

- 이번 업무협약은 기상과 농촌경제 분야 간 공동연구와 정보 및 전문 인력 교류를 통해 선진화된 농업기상 정보 개발과 이에 대한 활용 및 검증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과학영농을 견인하고 농수산물 수급 관리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 농림정책수립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.
- 향후 두기관은 맞춤형 농업기상 서비스 개발과 전 세계 곡물 작황 및 수급량 예측을 위한 기상·기후 감시 등 농업기상과 농업경제·경영 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국가 농림 정책 지원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※ 붙임1 : 국립기상연구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간 학술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협약서 1부.

## 【붙임 1】



### 학술교류 및 협력증진 협약서



국립기상연구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학술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양 기관의 국가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구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호 교류 협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협력분야)**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학술정보 및 전문가 상호교류와 기술자문
2. 공통 연구분야 발굴 및 공동연구수행
3. 양 기관에서 도출된 연구개발 정보 교환
4.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
5. 기타 상호 협의에 관한 사항

**제3조(양도금지)**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상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.

**제4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**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 
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**제5조(비용부담)**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, 분담한다.

**제6조(비밀유지)** ①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양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.

**제7조(협약조정)** 이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.

**제8조(협약서의 효력)**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이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2년 8월 17일

국립기상연구소  
소장 권원태

한국농촌경제연구원  
원장 이동필